



##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0년 6월

### • 예규·판례

가.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2020.04.07.)

▣ 예규 전문

【질의】

(사실관계)

○ A 법인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으로 사용되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를 개발 및 생산하는 주권상장 외국인투자기업으로

- 2008~2017 사업연도에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시점(비임상시험 단계)부터 임상 1 상 개시 승인 전까지 발생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함.

○ 하지만, 2018.9.19.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바이오시밀러의 자산화 가능 단계를 임상 1 상 개시 승인 이후로 설정함에 따라

- A 법인은 2008~2017 사업연도 중 임상 1 상 개시 승인 전에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0,000 억원 중 미상각액 000 억원을 2018 사업연도에 경상연구개발비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금귀속시기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음.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미상각 개발비를 감액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령법인-1433, 2019.07.10.)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 조 제 8 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 23 조 제 1 항을 적용하는 것임.

## ■ 평석

- 내국법인이 기존에 개발비(자산)으로 계상한 이후 해당 개발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건의 경우 개발비가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락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입니다.
- 이론적으로 보면,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은 회계처리와 달리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비록 회계상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이라면 회계상 개발비를 부인하고, 세무상 손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지침 강화에 따라 사후에 자산성이 부인된 개발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발비로 계상한 당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내국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  
0329, 2020.05.25)**

## ■ 예규 전문

### 【질의】

(사실관계)

○ A 법인은 발전회사로서 2018.2.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제 8 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는바

- 해당 공문의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및 기존 원전 조기폐쇄 등이 포함된 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임.

o A 법인은 해당 공문에 따라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2018 년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원전의 유형자산 장부가액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 2018 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손상차손 계상액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하였음.

o A 법인은 이후 2019 년에 해당 원전의 영구정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 년 말에 해당 원전에 대한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였음.

(질의내용)

o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고 해당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 후 법인세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일부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해당 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을 계상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법인세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차기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원전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평석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31 조 제 8 항).
- 법인세법은 이러한 상각부인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32 조 제 1 항, 제 5 항).
- 비록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 중인 원전을 조기폐쇄 하고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구정지 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함을 확실히 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 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법인세법 시행령 제 31 조 제 7 항), 영구정지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http://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